우리 경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기부신청서

기부자 정보	기부자 (명칭/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연락처	핸드폰: / 이메일:		
	대표자 (법인일 경우)			부서/담당자	/
	주 소				
일시 후원	기부금액	원		입금(예정)일	년 월 일
	입금계좌	☐ 경남 / 511-32-0000343 ☐ 농협 / 301-0032-9329-11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지회)			
정기 후원	자동이체 신청	☐ 5,000원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기타 (원)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일(매월)	☐ 10일 ☐ 25일
신청안내		전화) 055-270-6725 팩스) 055-264-6702 ☞ 신청서 작성 후 FAX 또는 메일(jesuslovehj@chest.or.kr)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본사(본인)는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모금회 기부지원 업무의 수행 (기부신청, 기부내역확인, 확인서발급, 기부자서비스 등)	10년간 보존 후 파기 (관계법령에 의거)

☞ 개인정보의 위탁회사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정보는 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10년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시행령 제20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금융결제원, KG이니시스, 해당은행	(CMS)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자동결제 신청 동의확인	기부금 결제 중단 시 까지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본인(본사)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1)]

20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귀중

---

1)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동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 · 비치 의무)